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893호 2012. 7. 17(화)

## ◀ 조 려 ▶

-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제1103호) ..... 2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104호) ..... 6
-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105호) ..... 19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106호) ..... 26
-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07호) ..... 40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108호) ..... 46

## ◀ 입법예고 ▶

-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2-1212호) ..... 49

## ◀ 고 시 ▶

- 포항도시계획시설(구룡포 중로 1-105호선) 실시계획 고시(제2012-64호)..... 61
- 포항도시계획시설(죽도동 소로 1-87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제2012-65호) ..... 63
- 포항시의회공고 (제15호) ..... 66

회 람									
--------	--	--	--	--	--	--	--	--	--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7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103호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에 준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재무회계)** 보건진료소의 자산, 수수료, 진료수입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징수 등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

**제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6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15명 이내
  - 4. 감사 1명
-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1조(협의회 활동수당 등)**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회의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년 보건진료소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3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르고 적립금등 사용 잔액은 의료수입으로 세입 하여야 한다.

## 1. 개정이유

「보건진료소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전면 폐지됨(2011. 12. 16.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수가기준에 준하는 진료비 징수 및 진료비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진료비징수 및 납부, 재무회계 등 필요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7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104호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우창동 란 중 43통 1반부터 43통 11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장량동 란 중 11통 1반부터 5반 까지, 27통 1반, 36통 1반부터 10반까지, 37통 1반부터 9반까지, 38통 1반 부터 7반까지, 39통 1반 부터 9반까지, 42통 1반부터 7반까지, 43통 1반부터 10반까지, 44통 1반부터 10반까지, 45통 1반부터 9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장량동 란 중 11통 6반, 39통 10반을 별지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장량동 란 중 37통 10반, 38통 8반, 51통 1반부터 6반까지, 52통 1반부터 4반까지, 53통 1반부터 6반까지, 54통 1반부터 8반까지, 55통 1반부터 12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연일읍 란 중 “오천리”를 “오천1리”로 하고, 오천2리 1반부터 10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연일읍 란 중 유강5리 2반 부터 13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유강5리 14반부터 16반까지, 유강7리 21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장기면 란 중 영암3리 1반부터 4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5반부터 6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남구 연일읍 오천리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구 명	읍 면 동	리 명	관 할 구 역
남 구	연 일 읍	오천리	오천1리, 2리 일원

②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남구 연일읍 오천리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구 명	읍 면 명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 정 운 영 리 명
남 구	연 일 읍	오천리	2	오천1리, 오천2리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복구)

동 명	통 명 칭	반 명 칭	구 역
우창동	43통 〈신설〉	1반 〈신설〉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1L 우현풍림아이원 101동 101호~2101호, 102호~2102호
		2반 〈신설〉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1L 우현풍림아이원 101동 303호~2203호, 204호~2104호, 105호~1805호
		3반 〈신설〉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1L 우현풍림아이원 101동 106호~2306호, 107호~2307호
		4반 〈신설〉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1L 우현풍림아이원 102동 101호~2301호, 102호~2302호
		5반 〈신설〉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1L 우현풍림아이원 102동 103호~1803호, 104호~2104호, 205호~2205호
		6반 〈신설〉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1L 우현풍림아이원 102동 206호~2106호, 207호~2007호
		7반 〈신설〉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1L 우현풍림아이원 103동 101호~25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8반 〈신설〉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1L 우현풍림아이원 104동 101호~17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9반 〈신설〉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1L 우현풍림아이원 105동 101호~2401호, 102호~2402호
		10반 〈신설〉	우현동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15B1L 우현풍림아이원 105동 103호~2103호, 204호~1104호
		11반 〈신설〉	우현동 우현구획정리지구 24B1L 포항시 사랑의 집 201-1~3호, 202-1~3호, 203-1~2호, 204-1~2호, 205-1~2호, 206-1~3호, 301-1~3호, 302-1~3호, 303-1~2호, 304-1~2호, 305-1~2호, 306-1~2호, 307-1~3호, 401-1~3호, 402-1~3호, 403-1~2호, 404-1~2호, 405-1~2호, 406-1~2호
장량동	11통	1반	장성동 1404~1406, 1389~1391
		2반	장성동 1392~1395
		3반	장성동 1400~1403
		4반	장성동 1396~1399
		5반	장성동 1407, 1409~1416
		6반	〈삭 제〉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장량동	27통	1반	장성동 1489, 1491~1505
	36통	1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1동 101호~1702호, 103호~1704호
		2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2동 101호~1603호
		3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2동 104호~1605호
		4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3동 101호~1603호
		5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3동 104호~1705호
		6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4동 101호~1702호
		7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5동 101호~1902호
		8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5동 103호~1904호
		9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6동 101호~1903호
		10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6동 104호~1905호
	37통	1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7동 301호~2202호
		2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7동 104호~2106호
		3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8동 101호~2002호
		4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9동 101호~2302호
		5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09동 103호~1904호
		6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0동 101호~2203호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장량동	37통	7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0동 204호 ~ 2205호
		8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1동 301호 ~ 2402호
	38통	9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1동 103호 ~ 2204호
		10반 <신설>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2동 101호 ~ 2202호
		1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3동 101호 ~ 2302호
	39통	2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3동 103호 ~ 2304호
		3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3동 105호 ~ 1906호, 상가
		4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4동 101호 ~ 2302호
		5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4동 103호 ~ 2304호
		6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5동 201호 ~ 2302호
		7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5동 103호 ~ 2204호
		8반 <신설>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6동 101호 ~ 2202호, 상가
		40통	1반
	2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7동103호 ~ 2404호
	3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7동105호 ~ 1906호
	4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8동101호 ~ 2302호
	5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8동103호 ~ 2304호
	6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9동101호 ~ 2202호
	7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19동103호 ~ 2204호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장량동	39통	8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20동101호 ~ 2302호
		9반	양덕동 1731 포항풍림아이원 120동103호 ~ 2304호
		10반	<삭 제>
	42통	1반	양덕동 1462 양덕하우스토리 101동201호 ~ 2502호
		2반	양덕동 1462 양덕하우스토리 101동203호 ~ 2504호
		3반	양덕동 1462 양덕하우스토리 102동102호 ~ 2002호
		4반	양덕동 1462 양덕하우스토리 103동201호 ~ 2402호
		5반	양덕동 1462 양덕하우스토리 104동102호 ~ 2003호
		6반	양덕동 1462 양덕하우스토리 105동201호 ~ 2602호
		7반	양덕동 1462 양덕하우스토리 105동203호 ~ 2604호
	43통	1반	양덕동 1448 대림e-편한세상2차201동102호 ~ 2402호, 103호 ~ 2403호, 104호 ~ 1904호, 301호 ~ 1901호
		2반	양덕동 1448 대림e-편한세상2차 202동102호 ~ 1902호, 301호 ~ 1901호
		3반	양덕동 1448 대림e-편한세상2차 203동102호 ~ 2602호, 103호 ~ 2603호, 104호 ~ 1904호, 301호 ~ 1901호
		4반	양덕동 1448 대림e-편한세상2차204동102호 ~ 2702호, 103호 ~ 2703호, 301호 ~ 1901호
		5반	양덕동 1448 대림e-편한세상2차 204동304호 ~ 2904호, 305호 ~ 2905호
		6반	양덕동 1448 대림e-편한세상2차 205동102호 ~ 3002호, 301호 ~ 3001호
		7반	양덕동 1448 대림e-편한세상2차 206동102호 ~ 1902호, 301호 ~ 1901호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장량동	43통	8반	양덕동 1448 대림e-편한세상2차 207동102호 ~ 2402호, 103호 ~ 2403호, 301호 ~ 2001호	
		9반	양덕동 1448 대림e-편한세상2차 207동304호 ~ 2304호, 305호 ~ 2305호	
		10반	양덕동 1448 대림e-편한세상2차 208동101호 ~ 2301호, 102호 ~ 2302호	
	44통	1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1동101호 ~ 2301호, 102호 ~ 2302호	
			2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1동103호 ~ 2303호, 204호 ~ 2304호
			3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2동104호 ~ 1404호, 303호 ~ 1503호
			4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2동105호 ~ 2105호, 106호 ~ 2106호, 107호 ~ 2107호
			5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2동301호 ~ 2201호, 302호 ~ 2202호
			6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3동301호 ~ 2601호, 302호 ~ 2602호
			7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3동303호 ~ 2603호, 304호 ~ 2604호
			8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4동301호 ~ 2601호, 302호 ~ 2602호
			9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4동303호 ~ 1903호, 304호 ~ 1804호
			10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4동305호 ~ 2105호, 306호 ~ 2106호, 307호 ~ 2107호
			45통	1반
			2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5동303호 ~ 2703호, 304호 ~ 2704호
			3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6동104호 ~ 1804호, 303호 ~ 1903호
			4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6동105호 ~ 2105호, 106호 ~ 2106호, 107호 ~ 2107호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장량동	45통	5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6동301호 ~ 2601호, 302호 ~ 2602호
		6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7동101호 ~ 2801호, 102호 ~ 2802호
		7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7동103호 ~ 2803호, 204호 ~ 2804호
		8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8동102호 ~ 2802호, 103호 ~ 2803호, 201호 ~ 2801호
		9반	양덕동1732 삼성쉐르빌108동104호 ~ 1704호, 105호 ~ 1605호, 106호 ~ 1706호
	51통 〈신설〉	1반 〈신설〉	장성동 1490-8 삼도뷰엔빌아파트101동 201호 ~ 101동 2603호
		2반 〈신설〉	장성동 1490-8 삼도뷰엔빌아파트102동 201호 ~ 102동 3304호
		3반 〈신설〉	장성동 1490-8 삼도뷰엔빌아파트103동 101호 ~ 103동 3304호
		4반 〈신설〉	장성동 1490-8 삼도뷰엔빌아파트104동 201호 ~ 104동 2602호
		5반 〈신설〉	장성동 1490-8 삼도뷰엔빌아파트105동 201호 ~ 105동 2304호
		6반 〈신설〉	장성동 1490-8 삼도뷰엔빌아파트106동 201호 ~ 106동 2602호
	52통 〈신설〉	1반 〈신설〉	장성동 1385-1388, 1370-1372
		2반 〈신설〉	장성동 1373-1376
		3반 〈신설〉	장성동 1381-1384
		4반 〈신설〉	장성동 1377-1380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장량동	53통 〈신설〉	1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6동101호 ~ 2502호
		2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6동103호 ~ 2505호
		3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7동101호 ~ 2503호
		4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7동105호 ~ 2507호
		5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8동101호 ~ 2502호
		6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8동103호 ~ 1405호
	54통 〈신설〉	1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1동101호 ~ 2502호
		2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1동103호 ~ 2505호
		3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2동101호 ~ 2503호
		4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2동105호 ~ 2507호
		5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3동101호 ~ 2502호
		6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3동103호 ~ 1405호
		7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5동201호 ~ 2502호
		8반 〈신설〉	장성동 1463 삼구트리니엔아파트105동203호 ~ 2505호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장량동	55통 〈신설〉	1반 〈신설〉	양덕동 1187-1256, 1296-1400
		2반 〈신설〉	양덕동 1257-1295, 1401-1447
		3반 〈신설〉	양덕동 1473-1482, 1570-1605 1696-1-1696-5, 1464-1472
		4반 〈신설〉	양덕동 1483-1513, 1606-1628 1696-1707
		5반 〈신설〉	양덕동 1514-1540, 1556-1569
		6반 〈신설〉	양덕동 1629-1647, 1660-1695
		7반 〈신설〉	양덕동 1541-1555, 1648-1659 1708-1730
		8반 〈신설〉	양덕동 1733-1766, 1814-1837
		9반 〈신설〉	양덕동 1767-1813, 1838-1867
		10반 〈신설〉	양덕동 1868-1885, 1886-1998
		11반 〈신설〉	양덕동 1999-2079
		12반 〈신설〉	양덕동 2080-2190

## 【별표 2】

##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남구)

읍면동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의 명칭	구역
연일읍	오천리	오천1리		
연일읍	오천리	오천2리 〈신설〉	1반 〈신설〉	1013 연일 에코코아루(아) 101동 201호 ~ 2002호, 203호 ~ 2004호
			2반 〈신설〉	1013 연일 에코코아루(아) 101동 305호 ~ 2005호 206호 ~ 2006호, 207호 ~ 2007호, 208호 ~ 1208호
			3반 〈신설〉	1013 연일 에코코아루(아) 102동 201호 ~ 2001호, 202호 ~ 2002호
			4반 〈신설〉	1013 연일 에코코아루(아) 102동 203호 ~ 2003호 204호 ~ 2004호, 205호 ~ 1705호, 206호 ~ 1206호
			5반 〈신설〉	1013 연일 에코코아루(아) 103동 201호 ~ 1901호, 202호 ~ 1902호
			6반 〈신설〉	1013 연일 에코코아루(아) 103동 203호 ~ 1903호 204호 ~ 1404호, 205호 ~ 1805호
			7반 〈신설〉	1013 연일 에코코아루(아) 103동 206호 ~ 2406호, 207호 ~ 2407호
			8반 〈신설〉	1013 연일 에코코아루(아) 104동 201호 ~ 1901호, 202호 ~ 1902호
			9반 〈신설〉	1013 연일 에코코아루(아) 104동 203호 ~ 1403호, 204호 ~ 1804호
			10반 〈신설〉	1013 연일 에코코아루(아) 104동 205호 ~ 2405호, 206호 ~ 2406호
	유강리	유강5리	2반	581-4 늘푸른마을 103호 ~ 2205호
			3반	581-4 늘푸른마을 106호 ~ 1607호
			4반	582, 583, 583-12, 583-11, 583-7, 583-4 583-2, 583-3, 584-3, 584-4, 584-1, 585-1 585-11, 585-12, 585-13, 585-8, 585-6, 586, 586-1, 586-3, 586-4, 588-3, 588-1, 588, 589, 589-1, 589-3, 589-4, 589-7, 589-9, 589-11, 589-12, 591-4, 591-5, 590-4, 590-6, 590-8, 590-10, 592-10, 592-11

읍면동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의명칭	구역	
연일읍	유강리	유강5리	5반	584 강변유강코아루4단지노블 401동 102호 ~ 2102호	
			6반	584 강변유강코아루4단지노블 402동 101호 ~ 2102호	
			7반	584 강변유강코아루4단지노블 403동 101호 ~ 1902호	
			8반	584 강변유강코아루4단지노블 405동 101호 ~ 1902호	
			9반	581 대림한솔타운2차 201동 101~1702	
			10반	581 대림한솔타운2차 201동 103~1204	
			11반	581 대림한솔타운2차 202동 101~1702	
			12반	581 대림한솔타운2차 202동 103~1704	
			13반	581 대림한솔타운2차 203동 101~1702	
			14반 〈신설〉	581 대림한솔타운2차 203동 103~1704	
			15반 〈신설〉	581 대림한솔타운2차 204동 101~1702	
			16반 〈신설〉	581 대림한솔타운2차 204동 103~1704	
				유강7리	21반 〈신설〉
		장기면	영암리	영암3리	1반
2반	영암리 362 ~ 417				
3반	영암리 346-2 ~ 361				
4반	영암리 308 ~ 346-1				
5반	〈삭 제〉				
6반	〈삭 제〉				

1. 개정이유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입주로 인한 리·통·반 구역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여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적관리는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리·통/반 조정 : 4개 읍면동 7개 통·리, 59개반 증설
- 리·통/반의 조정(안 별표)

읍면동	현행		조정		증감		사유
	리·통	반	리·통	반	리·통	반	
합계	156	1,199	163	1,258	7	59	○ 증 : 통6, 리1, 반 61 ○ 감 : 통0, 리0, 반 2
읍면계	64	525	65	537	1	12	○ 증 : 리1, 반 14 ○ 감 : 리0, 반 2
연일읍	31	339	32	353	1	14	■ 에코코아루(아), 유강 코아루3, 4단지 입주 (1개리 14개반 신설)
장기면	33	186	33	184	0	△2	■ 세대수 감소로 영암3리 소규모 반 통합 (2개반 감소)
동계	92	674	98	721	6	47	○ 증 : 통6, 반 47 ○ 감 : 통0, 반 0
우창동	42	295	43	306	1	11	■ 우현풍림아이원(512세대), 사랑의 집(50세대) 입주 (1개통, 11개반 신설)
장량동	50	379	55	415	5	36	■ 삼도뷰엔빌(502세대), 삼구트리니언(766세대) 원룸 등 입주 (5개통 36개반 신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7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105호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남구 오천읍, 대송면, 북구 청하면, 장량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 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남구	오 천 읍	원리, 문덕리, 향사리, 진전리, 갈평리, 문충리, 용산리, 광명리, 세계리, 용덕리, 구정리 일원 대송면 옥명리 산89-2, 산96-4, 산212-5, 산212-6, 산222-5, 산222-6 종전 용산리 1, 24-1~2, 25, 25-1, 26, 26-1, 27-2~4, 28 28-2, 355~357, 산11-10, 산11-26~28, 산11-31~32, 산13-1, 산13-3, 산14, 산15, 산16-1, 산17-1~2, 산21-1 산89-1, 산90, 산91, 산11-33를 광명리에 편입
	대 송 면	남성리, 공수리, 장동리, 흥계리, 산여리, 대각리, 송동리, 제내리, 옥명리 일원 장흥동 1867부터 1872까지, 1878의 1부터 1878의 3까지 오천읍 문덕리 912-1, 913, 920-1, 산57-1, 산58, 산59, 산60, 산61-2, 산61-3, 산68-1, 산69-2, 산70-1, 산71-1, 산73-1, 산74-1, 산122-1, 산 125-1, 산180-1, 산181-1, 산182-1, 산185-2 종전 남성리 511-3, 10-4, 260-2, 260-11~12, 230-2~3, 230-6, 260-8를 송동리에 편입
북구	청 하 면	덕성리, 덕천리, 미남리, 필화리, 용두리, 월포리, 방어리, 이가리, 청진리, 신흥리, 소동리, 고현리, 하대리, 상대리, 서정리, 명안리, 유계리, 청계리 일원 종전 청계리702-2를 서정리에 편입, 상대리6를 하대리에 편입

구 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복구	장 성 동	<p>장성동 일원  창포동 1~8, 9의1~9의 2, 10의1~10의 3, 11의1~15의2,  16의 1~18의3, 19의1~19의 3, 20의1~20의 2, 21의1~3,  22의1~24, 25의1~25의 5,  25의7~25의 8, 26의1~26의 2, 27의1~27의 8, 28의1, 28의  5~28의19, 29의1~29의 22, 29의24~30의4, 31의1, 31의  12~32의10, 32의12~35의37, 38의1~41, 42의1~42의2,  43의1~43의 7, 44의3, 45의1~46의1, 247의1~248, 252의  7~253의2, 253의4~253의10, 253의12, 253의14, 253의  18, 599, 599의2, 599의4, 600, 600의2, 601, 산 1~2,  산 2의3~2의 4, 산 3의3, 산 5~6의5, 산 7의1~7의 2,  산 8의1~10, 산 11의2  양덕동 435의1, 438의6, 438의8, 438의10, 441의1, 443의1,  461의11~461의 13, 526, 527, 531의1~531의 2, 532의  1~532의 2, 533의1~533의 2, 534의1~534의 2, 535~537,  538의1, 543의1, 544의1, 545~555, 555의1, 556의1,  560 의1, 561, 562의1, 563~570, 570의1, 571, 572, 573의1,  579의1, 580의1, 581의 1~581의 3, 583의4~583의 5, 626  의1~626의 2, 627, 628의1~628의 2, 629, 630의1, 631의1,  632, 803~805, 806의1, 807, 809, 810, 811의1~811의 2,  812, 813, 815, 825, 826, 829~831, 835, 836, 837의1,  837의10~837의 13, 837의 15~837의 24, 837의31, 925  의3, 1152의6~1152의 8, 1160의12~1160의 13, 1160의  15~1160의 16, 산 230의1, 산231의1, 산 232의1~232의 4,  산233, 산233의1~233의6, 산 234, 산 234의1, 산235의1, 산  255의1, 산257의1, 산258의1, 산 260의1~262의 2, 산263의1,  산271의1, 환호동 183의1, 184의1, 산24의4  중전 양덕동 925-1,925-4~7,925-9~10,926-1~3,929-2~3  929-2~3,930-3~4,935-2~3,942-4,960-3,961-3~4,962-1~4  963-1~6,964-1~3,965-1~2,966,966-3~4,967-2~3,968,  969,970,988,988-3~4,989-1~2,990,991-1~3,991-5,992-1  1160-17,1176-1,1178-11,1178-13,산220,산221,산221-1~13  산222,산223-1~20,산223,산224-1~12,산224,산225,  산225-1~5,산226,산226-1,산227,산227-1~7,산230-2,  산231-3를 장성동에 편입</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별표】</b>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b>【별표】</b>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구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남구	오천읍	원리, 문덕리, 향사리, 진전리, 갈평리, 문충리, 용산리, 광명리, 세계리, 용덕리, 구정리 일원, 대송면 옥명리 산89-2, 산96-4, 산212-5, 산212-6, 222-5, 산222-6	남구	오천읍	원리, 문덕리, 향사리, 진전리, 갈평리, 문충리, 용산리, 광명리, 세계리, 용덕리, 구정리 일원 대송면 옥명리 산89-2, 산96-4, 산212-5, 산212-6, 222-5, 산222-6 종전 용산리 1, 24-1~2, 25, 25-1, 26, 26-1, 27-2~4, 28, 28-2, 355~357, 산11-10, 산11-26~28, 산11-31~32, 산13-1, 산13-3, 산14, 산15, 산16-1, 산17-1~2, 산21-1, 산89-1, 산90, 산91, 산11-33를 광명리에 편입
	대송면	남성리, 공수리, 장동리, 흥계리, 산여리, 대각리, 송동리, 제내리, 옥명리 일원 장흥동 1867부터 1872까지, 1878의1부터 1878의 3까지 오천읍 문덕리 912-1, 913, 920-1, 산57-1, 산58, 산59, 산60, 산61-2, 산61-3, 산68-1, 산69-2, 산70-1, 산71-1, 산73-1, 산74-1, 산122-1, 산125-1, 산180-1, 산181-1, 산182-1, 산185-2,		대송면	남성리, 공수리, 장동리, 흥계리, 산여리, 대각리, 송동리, 제내리, 옥명리 일원 장흥동 1867부터 1872까지, 1878의 1부터 1878의 3까지 오천읍 문덕리 912-1, 913, 920-1, 산57-1, 산58, 산59, 산60, 산61-2, 산61-3, 산68-1, 산69-2, 산70-1, 산71-1, 산73-1, 산74-1, 산122-1, 산125-1, 산180-1, 산181-1, 산182-1, 산185-2, 종전 남성리 511-3, 10-4, 260-2, 260-11~12, 230-2~3, 230-6, 260-8를 송동리에 편입

현 행			개 정 안		
<b>【별표】</b>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b>【별표】</b>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구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청하면	덕성리, 덕천리, 미남리, 필화리, 용두리, 월포리, 방어리, 이가리, 청진리, 신흥리, 소동리, 고현리, 하대리, 상대리, 서정리, 명안리, 유계리, 청계리 일원		청하면	덕성리, 덕천리, 미남리, 필화리, 용두리, 월포리, 방어리, 이가리, 청진리, 신흥리, 소동리, 고현리, 하대리, 상대리, 서정리, 명안리, 유계리, 청계리 일원 종전 청계리702-2를 서정리에 편입, 상대리6를 하대리에 편 입
	북구	장성동 일원 창포동 1~8, 9의1~9의 2, 10의 1~10의 3, 11의1~15의2, 16의 1~18의3, 19의1~19의 3, 20의 1~20의 2, 21의1~3, 22의 1~24, 25의1~25의 5, 25의 7~25의 8, 26의1~26의 2, 27의 1~27의 8, 28의1, 28의5~28의 19, 29의1~29의 22, 29의 24~30의4, 31의1, 31의12~32의10, 32의12~35, 37, 38의 1~41, 42의1~42의2, 43의1~43의 7, 44의3, 45의 1~46의1, 247의1~248, 252의 7~253의2, 253의 4~253의10, 253의12, 253의14, 253의18, 599, 599의2, 599의4, 600, 600의2, 601, 산 1~2, 산 2의 3~2의 4, 산 3의3, 산 5~6의5, 산 7의1~7의 2, 산 8 의1~10, 산 11의2, 양덕동 435의1, 438의 6, 438의8, 438의10, 441의1, 443의1, 461의11~461의13, 526, 527, 531의 1~531의 2, 532의1~532의 2, 533의1~533 의2, 534의1~534의2, 535~537, 538의1, 543의1, 544의1, 545~555, 555의1, 556의1, 560의1, 561, 562의1, 563~570, 570의1, 571, 572,		북구	장성동 일원 창포동 1~8, 9의1~9의 2, 10의1~10 의 3, 11의1~15의2, 16의 1~18의3, 19의1~19의 3, 20의1~20의 2, 21의 1~3, 22의1~24, 25의1~25의 5, 25의7~25의 8, 26의1~26의 2, 27의 1~27의 8, 28의1, 28의5~28의19, 29의1~29의 22, 29의24~30의4, 31의1, 31의12~32의10, 32의12~35 의37, 38의1~41, 42의1~42의2, 43의1~43의 7, 44의3, 45의1~46의 1, 247의1~248, 52의7~253의2, 253의4~253의10, 253의12, 253의 14, 253의18, 599, 599의2, 599의4, 600, 600의2, 601, 산 1~2, 산 2의 3~2의 4, 산 3의3, 산 5~6의5, 산 7 의1~7의 2, 산 8의1~10, 산 11의2 양덕동 435의1, 438의6, 438의8, 438의10, 441의1, 443의1, 461의 11~461의13, 526, 527, 531의 1 ~531의 2, 532의1~532의 2, 533의 1~533의2, 534의1~534의2, 535~537, 538의1, 543의1, 544의1, 545~555, 555의1, 556의1, 560의1, 561, 562의1, 563~570, 570의 1, 571, 572, 573의1, 579의1, 580 의1, 581의1~581의 3, 583의4~583 의 5, 626의1~626의 2, 627, 628의 1~628의 2, 629, 630의1, 631의1, 632, 803~805, 806의1, 807, 809,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구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북구	장성동	573의1, 579의1, 580,의1, 581 의1~581의 3, 583의4~583의 5, 626의1~626의 2, 627, 628 의1~628의 2, 629, 630의1, 631의 1,632, 803~805, 806의 1, 807, 809, 810, 811의1~811의 2, 812, 813, 815, 825, 826, 829~831,835,836, 837의1, 837 10~837의 13,837의 15~837의 24, 837의31,925의3, 1152의 6~1152의 8, 1160의 12~1160 의 13, 1160의 15~1160의 16, 산 230의1, 산231의1, 산232의 1~232의 4, 산233, 산233의 1~233의6, 산 234, 산234의1, 산235의1, 산255의1, 산257의1, 산258의1, 산 260의1~262의 2, 산263의1, 산271의 1, 환호동 183의 1, 184의1, 산24의4 종전 양덕동 925-1, 925-4~7, 925-9~10, 926-1~3, 929-2~3 929-2~3, 930-3~4, 935-2~3, 942-4, 960-3, 961-3~4, 962-1~4, 963-1~6, 964-1~3, 965-1~2, 966, 966-3~4, 967-2~3, 968, 969, 970, 988, 988-3~4, 989-1~2, 990, 991-1~3, 991-5, 992-1, 1160-17, 1176-1, 1178-11, 1178-13, 산220, 산221, 산221-1~13, 산222, 산223-1~20, 산223, 산224-1~12, 산224, 산225, 산225-1~5, 산226, 산226-1, 산227, 산227-1~7, 산230-2, 산231-3를 장성동에 편입	북구	장성동	810, 811의1~811의 2, 812, 813, 815, 825, 826, 829~831, 835, 836, 837의1, 837의10~837의 13, 837의 15~837의 24, 837의31, 925의 3, 1152의 6~1152의 8, 1160 의 12~1160의 13, 1160의 15~1160 의 16, 산 230의 1, 산231의 1, 산 232의 1~232의 4, 산233, 산233의 1~233의 6, 산 234, 산 234의 1, 산 235의 1, 산255의 1, 산257의 1, 산258 의 1, 산 260의 1~262의 2, 산263의 1, 산271의 1, 환호동 183의 1, 184의 1, 산 24의 4 종전 양덕동 925-1,925-4~7, 925-9~10, 926-1~3, 929-2~3 929-2~3, 930-3~4,9 35-2~3, 942-4, 960-3, 961-3~4, 962-1~4, 963-1~6, 964-1~3, 965-1~2, 966, 966-3~4, 967-2~3, 968, 969, 970, 988, 988-3~4, 989-1~2, 990, 991-1 ~3, 991-5, 992-1, 1160-17, 1176-1, 1178-11, 1178-13, 산220, 산221, 산221-1~13, 산222, 산223-1~20, 산223, 산224-1~12, 산224, 산225, 산225-1~5, 산226, 산226-1, 산227, 산227-1~7, 산230-2, 산231-3를 장성동에 편입

**1. 개정이유**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오천광명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존 지형지물 경계를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적인 경계로 행정구역울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 장성 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 양덕동 일부 132필지 150,548㎡를 장성동에 편입
- 오천 광명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용산리 일부 33필지 170,216㎡를 광명리에 편입
- 법정리간 불합리한 경계조정(대송면, 청하면)
  - 대송면 남성리 일부 9필지 2,119㎡를 대송면 송동리에 편입
  - 청하면 청계리 일부 1필지 1,190㎡를 청하면 서정리에 편입
  - 청하면 상대리 일부 1필지 126㎡를 청하면 하대리에 편입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7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106호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민볼링장” 을 “시민볼링장, 인라인롤러장, 야구장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의” 를 “그 밖의” 로, 같은 조 제6호 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30인이상” 을 “30명 이상”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1 내지 별표5” 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야간 : 18:00부터 23:00까지

**제4조의2** 본문 중 “2인” 을 “2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제1항 중 “제2조제7호 내지 제12호” 를 “제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 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제14조제1호 내지 제4호” 를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이용료 징수에 한해서는 위탁 시까지 무료 개방한다.

【별표 1】

전 용 기 본 료

구분	사용목적		단위	요금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주경기장	체육경기	트랙	주간	30,000	50,000	
		론그라운드	주간	50,000	80,000	
	체육이외	트랙	주간	120,000	150,000	
		론그라운드	주간	150,000	200,000	
포항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40,000	80,000	전기료 및 가스료는 별도 계산	
		야간	60,000	120,000		
	체육이외	주간	150,000	200,000		
		야간	200,000	250,000		
실내수영장	체육경기	주간	40,000	50,000	"	
	체육이외	주간	60,000	80,000		
포항국민 체육센터	체육경기	주간	40,000	80,000	"	
		야간	60,000	120,000		
	체육이외	주간	150,000	200,000		
		야간	200,000	250,000		
흥 해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20,000	40,000	"	
		야간	30,000	60,000		
	체육이외	주간	75,000	100,000		
		야간	100,000	125,000		
사격장	1사대 4시간		10,000	15,000		
테니스장	체육경기	주간	20,000	40,000		
	체육이외	야간	30,000	45,000		
국궁장	체육경기	주간	20,000	30,000		
	체육이외	주간	40,000	60,000		
인라인 롤러장	체육경기	주간	30,000	45,000	방송시설 사용료는 별도 계산	
		야간	45,000	65,000		
	체육이외	주간	90,000	130,000		
		야간	130,000	200,000		
포항 야구장	체육경기	주간	60,000	80,000	전기료 및 가스료는 별도 계산 (1회 4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2할 가산)	
		야간	80,000	120,000		
	체육이외	주간	150,000	200,000		
		야간	200,000	250,000		

【별표 2】

## 이 용 료 (제4조제4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이용분	기 준	요 금	비 고
포항국민 체육센터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1인1시간	1,500	
		월	30,000	
	헬스	1회	2,000	
		월	40,000	
	에어로빅	월	30,000	
	요가	월	40,000	
	취미교실/강의	월(주1회)	5,000	
풋살구장	주간	1시간	20,000	
	야간	1시간	22,000	
실 내 수영장	어린이	1회	2,500	
		월	50,000	
	어른	1회	3,000	
		월	68,000	
시 민 볼링장	어른	1게임	2,500	
	학생	1게임	2,000	
사격장	개인	1사태(4시간당)	1,500	
테니스장	개인	1코트(2시간당)	1,500	
정구장	개인	1코트(2시간당)	1,000	
국궁장	개인	1회(2시간당)	1,000	
인라인롤러장	개인	1인 2시간당	1,500	
야구장	개인	1회 2시간당	1,500	
포항스포츠포 아카데미	골프	월	30,000	주경기장, 포항체 육관 흥해실내체 육관 운영종목
	탁구	월	10,000	
	배드민턴	월	10,000	
	에어로빅	월	10,000	
	요가	월	10,000	
	헬스	월	20,000	

※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용구분	사용장소(시설)	부속시설	기타사항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일간)
경기 (행사)명				
관람권	개인	어린이 관람권	원	매
		청소년 및 군인관람권	원	매
		노인 관람권	원	매
		어른 관람권	원	매
	단체	어린이 관람권	원	매
		청소년 및 군인관람권	원	매
		노인 관람권	원	매
		어른 관람권	원	매
		초대권	원	매
	기타사항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용장소					
사용시설 (사용내용)					
경 기 명 (행사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허가조건					
허가취소 정지및기타 사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검인 및 예매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

대 회 명	
일 시	

주 최 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구 분	관람료	매 수	비 고	초 대 권	구 분	매 수
특 석					특 석	
일 반					일 반	
청소년,군경					할 인 권	
어린이,노인						
단 체						
계						

위와 같이 검인(예매)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관람권 잔표 확인 및 정산서

행사명	
사용자	
행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종	별	검인수	매표수	잔표수	관람료	체육기금 (문예기금)	비	고
직 매	특 석							
	일 반							
	군·학생							
	소 계							
예 매	특 석							
	일 반							
	군·학생							
	초대권							
	소 계							
합 계								
지출내역		수 입 액		경기장사용료		할부사용료		

위와 같이 잔표확인(정산)후 인계인수 하였음

년 월 일

인 계 자 (서명 또는 인)

인 수 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 (생 략)</b></p> <p>1. “체육시설” 이라 함은 주경기장, 포항 체육관, 실내수영장, 포항국민체육센터, 흥해실내체육관, 역도장, 실내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인덕구장, 시립풋살 구장, <u>시민볼링장</u> 을 말하며, “시설” 이라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2. “체육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전람 또는 <u>기타</u>의 행위를 말한다.</p> <p>3. ~ 5. (생 략)</p> <p>6. “사용자” 라 함은 위 <u>제3호 내지 제5호</u>의 자를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7. “단체입장” 이라 함은 특정단체 구성원 <u>30인이상</u>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 하는 것을 말한다.</p> <p>8. ~ 13.(생 략)</p> <p><b>제4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① (생 략)</b></p> <p>② 경기장의 사용료는 “<u>별표1 내지 별표5</u>” 와 같이 하며 경기장 사용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주간 : 09:00부터 18:00까지</p> <p>2.<u>야간 : 18:00부터 09:00까지</u></p> <p>3.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b>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b></p> <p>1. ----- ----- ----- -----<u>시민볼링장, 인라인</u> <u>롤러장, 야구장 등</u> ----- -----</p> <p>2. ----- ----- ----- <u>그 밖의</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6. ----- <u>제3호부터 제5</u> <u>호까지에서</u> 규정함 ----- -----</p> <p>7. ----- ---<u>30명 이상</u>----- -----</p> <p>8. ~ 13.(현행과 같음)</p> <p><b>제4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b></p> <p>② -----<u>별표 1부터 별표 5</u> <u>까지</u> ----- -----</p> <p>1.(현행과 같음)</p> <p>2. <u>야간 : 18:00부터 23:00까지</u></p> <p>3.(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b>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p> <p>1. ~ 5. (생략)</p> <p>6. <u>기타</u>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p>	<p><b>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b>----- ----- <u>2명</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p>
<p><b>제5조(불허가)</b>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3. <u>각종단체의 바자회 등 물품판매 및 상거래 행위</u></p> <p>4. (생략)</p> <p><u>&lt;신설&gt;</u></p>	<p><b>제5조(불허가)</b>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삭제)</u></p> <p>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p>
<p><b>제9조(관람료)</b> ① 경기장을 전용으로 허가 받은 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u>제2조제7호 내지 제12호</u>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b>제9조(관람료)</b> ① ----- ----- ----- <u>제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b> (생략)</p> <p>1. ~ 3. (생략)</p> <p>4. <u>기타</u> 시장이 공용,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p>	<p><b>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b>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b>제13조(허가조건)</b> 시장은 경기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u>기타</u>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p>	<p><b>제13조(허가조건)</b> ----- ----- <u>그 밖에</u>----- ----- -----</p>

현 행	개 정 안
<p><b>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b>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6. <u>기타</u>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p>	<p><b>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b> -----  <del>---- 각 호의 어느 하나-----</del>  -----  -----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p>
<p><b>제16조(사용료의 반환)</b> (생 략)</p> <p>1. ~ 3. (생 략)</p> <p>4. <u>제14조제1호 내지 제4호</u>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일자까지 계산공제 후 5할을 반환한다.</p>	<p><b>제16조(사용료의 반환)</b>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u>---</p> <p>-----  -----  -----</p>
<p><b>제17조(사용변상책임)</b> ① ~ ③ (생 략)</p> <p>④ 변상금은 매표금, <u>기타</u> 기탁된 유가 증권이나 물건으로 같음하여 배상하게 할 수 있다.</p>	<p><b>제17조(사용변상책임)</b>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그 밖의</u>---</p> <p>-----  -----</p>
<p><b>제18조(입장의 제한)</b>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b>제18조(입장의 제한)</b> ----- <u>각</u>  <u>호의 어느 하나</u>-----  -----  -----  1.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전 용 기 본 료 (단위 : 원)					【별표 1】 전 용 기 본 료 (단위 : 원)								
구분	사용목적		단위	요금		비고	구분	사용목적		단위	요금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주 경기장	체육경기	트랙	주간	30,000	50,000		주 경기장	체육경기	트랙	주간	30,000	50,000	
		라운드	주간	50,000	80,000				라운드	주간	50,000	80,000	
	체육이외	트랙	주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트랙	주간	120,000	150,000		
		라운드	주간	150,000	200,000			라운드	주간	150,000	200,000		
포항 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40,000	80,000	전기료 및 가스료는 별도 계산	포항 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40,000	80,000	전기료 및 가스료는 별도 계산	
			야간	60,000	120,000				야간	60,000	120,000		
	체육이외	주간	150,000	200,000	체육이외		주간	150,000	200,000				
		야간	200,000	250,000			야간	200,000	250,000				
실내 수영장	체육경기	주간	40,000	50,000	"	실내 수영장	체육경기	주간	40,000	50,000	"		
	체육이외	주간	60,000	80,000			체육이외	주간	60,000	80,000			
포항 국민 체육 센터	체육경기		주간	40,000	80,000	"	포항 국민 체육 센터	체육경기	주간	40,000	80,000	"	
			야간	60,000	120,000				야간	60,000	120,000		
	체육이외	주간	150,000	200,000	체육이외		주간	150,000	200,000				
		야간	200,000	250,000			야간	200,000	250,000				
홍해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20,000	40,000	"	홍해 실내 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20,000	40,000	"	
			야간	30,000	6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이외	주간	75,000	100,000	체육이외		주간	75,000	100,000				
		야간	100,000	125,000			야간	100,000	125,000				
사격장	1사대 4시간		10,000	15,000		사격장	1사대 4시간		10,000	15,000			
테니스 장	체육경기	주간	20,000	40,000		테니스 장	체육경기	주간	20,000	40,000			
	체육이외	야간	30,000	45,000			체육이외	야간	30,000	45,000			
국공장	체육경기	주간	20,000	30,000		국공장	체육경기	주간	20,000	30,000			
	체육이외	주간	40,000	60,000			체육이외	주간	40,000	60,000			
인라인 롤러장	체육경기	주간	30,000	45,000	방송시설 사용료는 별도계산	인라인 롤러장	체육경기	주간	30,000	45,000	방송시설 사용료는 별도계산		
		야간	45,000	65,000				야간	45,000	65,000			
	체육이외	주간	90,000	130,000			체육이외	주간	90,000	130,000			
		야간	130,000	200,000				야간	130,000	200,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포항 야구장	체육경기	주간	60,000	80,000	" 전기료 및 가스료는 별도계산 (1회 4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2할 가산)		
		신설	신설	신설				야간	80,000	120,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체육이외	체육이외	주간	150,000	200,000			
		신설	신설	신설				야간	200,000	250,000			

현 행					개 정 안				
<b>【별표2】</b> <b>이 용 료(제4조제4항 관련)</b> (단위:원)					<b>【별표2】</b> <b>이 용 료(제4조제4항 관련)</b> (단위:원)				
구분	이용분류	기준	요금	비고	구분	이용분류	기준	요금	비고
포항국민 체육센터	농구,배구, 탁구, 배드민턴	1인1시간	1,500		포항국민 체육센터	농구,배구, 탁구, 배드민턴	1인1시간	1,500	
		월	30,000				월	30,000	
	헬스	1회	2,000			1회	2,000		
		월	40,000			월	40,000		
	에어로빅	월	30,000			월	30,000		
	요가	월	40,000			월	40,000		
	추천실강의	월(주1회)	5,000			월(주1회)	5,000		
풋살구장	주간	1시간	20,000	주간	1시간	20,000			
	야간	1시간	22,000	야간	1시간	22,000			
실 내 수영장	어린이	1회	2,500	어린이	1회	2,500			
		월	50,000	월	50,000				
	어 른	1회	3,000	어 른	1회	3,000			
		월	68,000	월	68,000				
시 민 볼링장	어른	1게임	2,500	어른	1게임	2,500			
	학생	1게임	2,000	학생	1게임	2,000			
사격장	개인	1사대(4시간당)	1,500	사격장	개인	1사대(4시간당)	1,500		
테니스장	개인	1코트(2시간당)	1,500	테니스장	개인	1코트(2시간당)	1,500		
정구장	개인	1코트(2시간당)	1,000	정구장	개인	1코트(2시간당)	1,000		
국궁장	개인	1회(2시간당)	1,000	국궁장	개인	1회(2시간당)	1,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인라인 롤러장	개인	1인 2시간당	1,5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야구장	개인	1회 2시간당	1,5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포항 스포츠 아카 데미	골프	월	30,000	주경 기장, 포항 체육 관 홍해 실내 체육 관 운영 종목	
	신설	신설	신설		탁구	월	10,000		
	신설	신설	신설		배드민턴	월	10,000		
	신설	신설	신설		에어로빅	월	10,000		
	신설	신설	신설		요가	월	10,000		
신설	신설	신설	헬스	월	20,000				

※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내수영장 차기 임대계약시부터 적용한다.

※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신설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포항스포츠아카데미 개설에 따른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리규정 및 경기장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 포항스포츠 아카데미 개설 및 포항인라인롤러경기장, 포항야구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규정 마련(안 별표 1, 별표 2)
- 경기장 야간 사용시간 조정 : 익일 09:00까지 → 금일 23:00까지
- 일부 자구수정 및 별지 서식변경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7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107호

###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포항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 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남구 대도동 328-15번지에 둔다.

**제3조(교통랜드의 시설)**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시설 : 유형별 교통교육기자재, 영상 및 방송장비, 교육용자동차, 교통교육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2. 실외교육시설 : 도로(차도, 인도), 횡단보도, 육교,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시설, 창고 등

**제4조(업무)**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3.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4. 시설물과 교육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랜드의 운영시간은 10:00~18:00까지로 한다.

②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6조(이용료)** 교통랜드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이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랜드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제8조(교통랜드 사용 및 신청)** ① 포항시민은 누구나 교통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통랜드를 사용하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통랜드 사용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랜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랜드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공익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교통랜드 사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랜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교통랜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민간위탁사무 중 “교통행정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관리·운영

## 【별표】

##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이용료(제6조 관련)

### 1. 교통랜드 이용료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어린이, 중고생	500원	300원	○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수급권자 - 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성 인	1,000원	600원	

※ 단체는 10명 이상이며, 인솔교사는 무료



**1. 제정이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교통체험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어린이 교통랜드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5번지
- 어린이 교통랜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어린이 교통랜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어린이 교통랜드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어린이 교통랜드 사용신청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어린이 교통랜드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까지)
-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7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108호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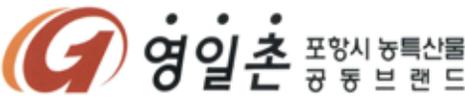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특산물 공동상표(제2조 관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b>제3조(대상품목)</b>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대상품목으로 별표 2와 같다.</p>	<p><b>제3조 &lt;삭 제&gt;</b></p>
<p><b>【별표1】 농특산물 공동상표(제2조 관련)</b></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p><b>【별표1】 농특산물 공동상표(제2조 관련)</b></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편람에 따라 표시</p>
<p><b>【별표2】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대상 품목</b>                      곡류(2종), 두류(2종), 과실류(6종),                      서류(2종), 야채류(15종), 버섯류(1종),                      화훼류(1종), 가공식품류(15종), 청량 및                      과실음료(5종), 축산물(3종), 수산물(4종)</p>	<p><b>【별표1】 &lt;삭 제&gt;</b></p>

**1. 개정이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영일촌」 을 소비자 인지도 향상으로 새로운 도약을 도모 하기 위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영일만 친구**」 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중인 지정상품은 4개류(제29류~제32류) 약 1,000종의 개별품목이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 될 수 있어 대상품목 지정 조항인 제3조를 삭제
-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영일촌**” 에서 “**영일만 친구**” 로 변경(안 별표1)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1212호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포항시장 박승호

###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중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점용물의 종류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점용물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일부를 개정(안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3. 관련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7월 18일 ~ 8월 6일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8.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도로과(도로행정담당)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우편번호 790-722)
- 전화 054-270-3314, FAX 054-270-3430, 이메일 shj38@korea.kr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당해년도” 를 “해당연도” 로 하며, “3월” 을 “3개월”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물의 종류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2조 및 제4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 한다), 시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 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1.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표시면적 1㎡	1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단위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m <sup>2</sup>	1일	140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점용 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m<sup>2</sup>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자가변동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도로법」 제38조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 (이하 “도로 점용물” 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그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점용료의 부과)</b>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p> <p><b>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생 략)</b></p> <p>1. (생 략)</p> <p>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p> <p>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p>	<p><b>제1조(목적)</b> ----- ----- 「<u>농어촌도로 정비법</u>」 제19조제2항에 따라 ----- ----- <u>그 밖에</u>----- ----- ----- ----- -----</p> <p><b>제3조(점용료의 부과)</b> -----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u>그 밖에</u> ----- ----- -----</p> <p><b>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b></p> <p>1. (현행과 같음)</p> <p>2. ----- ----- <u>해당</u> ----- ----- <u>해당연도</u> ----- <u>3개</u> <u>월</u>----- ② -----<u>그 밖에</u> ----- ----- ----- -----</p>

현 행	개 정 안																																																			
<p><b>[별표]</b></p> <p style="text-align: center;"><u>점용의 종류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u> (2008년도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u>점용의 종류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u> (2009년도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u>점용의 종류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u> (2010년도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u>점용의 종류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u> (2011년도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b>점용의 종류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 (2012년 1월1일 이후 적용)</b> (제2조 및 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금액의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점용물의 종류</th> <th colspan="2">기준 단위</th> <th rowspan="2">점용료</th> </tr> <tr> <th>점용단위</th> <th>기간 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td> <td>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td> <td rowspan="3">1개</td> <td>850</td> </tr> <tr> <td>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유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td> <td>1년</td> <td>1,250</td> </tr> <tr> <td>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td> <td></td> <td>24,100</td> </tr> <tr> <td></td> <td>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td> <td>점용면적1㎡</td> <td>1년</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td> </tr> <tr> <td rowspan="4">2.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td> <td>지름0.1m 이하</td> <td rowspan="4">길이 1미터</td> <td>1년</td> <td>200</td> </tr> <tr> <td>지름0.1m 초과 0.2m 이하</td> <td>400</td> </tr> <tr> <td>지름0.2m 초과 0.4m 이하</td> <td>850</td> </tr> <tr> <td>지름0.4m 초과 0.6m 이하</td> <td>1,250</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유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년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p><b>[별표]</b></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b>점용물의 종류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b> (제2조 및 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금액의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점용물의 종류</th> <th>기준단위</th> <th rowspan="2">점용료</th> </tr> <tr> <th>점용 단위</th> <th>기간 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 rowspan="4">2.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유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년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사한 것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 치(어스앵 커), 압거,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길이 1미터	1년	지름0.1m 이하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 출간판 을포함 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 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4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4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차 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 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 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 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 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5. (현행과 같음)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 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 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 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타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 매대, 구두 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일시 점용한 것
		기타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현 행				개 정 안			
<p>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p>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9. (현행과 같음)			
<p>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p>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점용 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토지 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 판매		토지 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 판매			토지 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주택		토지 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주택		토지 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타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기타		최동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 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 7. (생 략)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 7. (현행과 같음)

8. -----  
 -- 10퍼센트 -----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64호

포항도시계획시설(구룡포 중로 1-105호선)  
실시계획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포항시장 박승호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포항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류 105호선)사업
  - 명 칭 : 구룡포 중로 1-105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A=4,633㎡
  - 규 모 : L=230m B=20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및 주소 : 포항시장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포항시청))
-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 ~ 2012. 12.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수산진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수산진흥과(☎054-270-28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위치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등기부상)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합 계				22,314	4,633						
1	구룡포리	954-13	잡종지	9,361	96		해양 수산부				
2	구룡포리	954-21	잡종지	8,873	3,759		해양 수산부				
3	구룡포리	954-22	도로	1,064	62		경찰청				
4	구룡포리	954-23	도로	613	385		국토 해양부				
5	구룡포리	954-24	하천	2,403	331		국토 해양부				

포항시 고시 제2012-65호

## 포항도시계획시설(죽도동 소로1-87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포항도시계획시설(도로:죽도동 소로1-87호선)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7월 12일

포항시장 박승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5-6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포항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류 87호선)사업
  - 명 칭 : 죽도동 서부시장옆(소1-87)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283.7㎡
  - 규 모 : L=71.0m B=1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포항시장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포항시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실시계획 고시일
  - 준 공 : 201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 지 조 서

일 련 번 호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	포항시 북 구 죽도동	195-60	대	50.3	50.3	포항시 득량동 12-1번지	정병찬				
2	“	195-61	대	45.4	45.4		포항시				
3	“	195-62	대	36.5	36.5		포항시				
4	“	195-63	대	36.4	36.4		포항시				
5	“	195-59	대	38.0	38.0		포항시				
6	“	195-65	대	37.4	37.4		포항시				
7	“	195-64	대	39.7	39.7		포항시				

◎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위치	지 번	종류	구조 및 규격	단 위	수량	소유자(수령자)		
							주 소	성 명	
1	죽도동	195-23(1층)	식당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22.70	포항시 용흥동 용흥우방APT 118동1507호	정 병 찬	
			식당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42.50			
			주방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6.50			
			방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12.00			
			주방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9.50			
			방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8.00			
			화장실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2.20			
			주방	판넬	㎡	9.90			
			대문	철재	식	1.00			
			정화조	-	식	1.00			
			상수도	-	식	1.00			
				계단	콘크리트	식			1.00
2	죽도동	195-23(2층)	주방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6.00	포항시 용흥동 용흥우방APT 118동1507호	정 병 찬	
			방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20.20			
			주방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5.40			
			방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20.20			
			주방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11.80			
			방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3.00			
			화장실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2.80			
			발코니	철근콘크리트밋벽돌조	㎡	1.80			
			다용도실	블럭슬레트	㎡	2.30			
			보일러	기름	대	1.00			
				계단	철재	식			1.00

※ 관계도서 등은 포항시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로과(☎054-270-34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회공고 제 15 호

# 공 고

포항시의회 공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각 및 폐기한 공인의 인영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 7. 9 .  
포항시의회의장

- 1. 개각공인 사용개시일 : 2012. 7. 9.
- 2. 폐기공인 폐기일 : 2012. 7. 9.
- 3. 공인개각 및 폐기 사유 :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변경

### 【개각공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포항시의회자치행정 위원회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1.8 정방형		
포항시의회경제산업 위원회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1.8 정방형		
포항시의회복지환경 위원회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1.8 정방형		



【폐기공인】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포항시의회총무경제 위원회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1.8 정방형		
포항시의회총무경제 위원회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1.8 정방형		